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2500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윤예림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991,960원 및 그중 10,414,808원에 대하여는 2022. 2. 24.부터, 8,239,128원에 대하여는 2022. 5. 16.부터, 10,081,095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8,212,258원에 대하여는 2022. 7. 22.부터, 각 2022. 10. 1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들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B는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2021. 7. 15. 접수 제889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은 1998. 11. 23.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피고들은 2021. 7. 8.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는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피고들이 7/14 지분씩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지분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2021. 7. 15. 피고 A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갑8호증, 을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이 피고 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로써 피고 A의 무자력이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피고 A 지분에 관하여 마친 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으로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후인 2021. 8. 3. 피고 A 명의 지분에도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피고 A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다) 더욱이, 이 사건 재산분할로써 피고 A이 무자력이 되었다거나 무자력이 심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명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정

별지